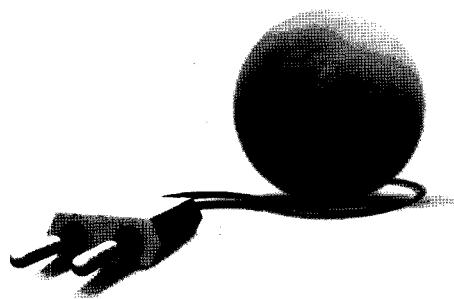


가전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①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등급 기준 조정이 필요한 전기냉장고·전기드럼세탁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상향 조정, ② 가스온수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 ③ 백열전구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밝혔다. ('11. 1. 1부터 시행)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3개 제품을 기 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만시 생산·판매 금지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

어섬에 따라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09)은 냉장고 72%, 세탁기 71%, 드럼세탁기 74%, 공기청정기 79%, 식기건조기 100%이다.

전기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을 19%(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기 위해 정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다.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1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신규 및 기준강화 제품 】

구 분	대 상 제 품
신규 (1개 제품)	가스온수기
효율기준 상향조정 (6개 제품)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백열전구 (퇴출)

제도의 적용 대상인 제품도 세탁용량 15kg → 20kg 이하로 확대하였다.

전기드럼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2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세탁용량 15 → 20kg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30%(세탁용량 10kg 기준) 상향조정 하였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이란 제품의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 수준 이상인 제품의 생산 판매를 제한하고자 설정한 기준이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만 시 생산·판매 금지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기청정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67%(1등급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7%(표준사용면적 26.4m² 기준) 상향 조정하며, 식기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50%(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2%(8인용 기준) 강화하였다.

연간 10만대 이상 보급되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은 가스온수기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미국, 일본 등도 가스온수기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미국) 또는 탑러너(일본)를 적용 중이다.

또한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예정된대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할 예정이다. 최저소비효율기준 20 lm/W 이상, 현재 백열전구 10~15 lm/W이다.

1단계로 70W 이상 150W 이하(주로 100W형, 전체 백열전구의 26%)의 백열전구는 '12.1.1부터 퇴출 되며, 2단계로 25W 이상 70W 미만(주로 60W형, 30W형, 전체 백열전구의 74%)의 백열전구는 '14.1.1부터 퇴출된다.

금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853GWh의 전기 절감, 90만Nm³ 가스 절감 등 연간 총 943억원의 에너지절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08.1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 발표 이후 1년간의 연구 용역('09년), 각 품목별 업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 2차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지경부 및 총리실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최근 에너지스타 강화 등 국제적인 에너지효율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번 국내 기준 강화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소비효율기준(퇴출기준, 20 lm/W) 】

현행		개정(안)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40W 미만	8.3	25W 이상 40W 미만	8.3	20.0
40W 이상 70W 미만	11.4	40W 이상 70W 미만	11.4	20.0
70W 이상 150W 이하	13.2	70W 이상 150W 이하	20.0	20.0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의 개요를 보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생산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에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이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 기자재의 지정 등)

대상품목은 23개 품목으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 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자동차이

다. 등급제 적용 없이 최저소비 효율기준만 적용한 것은 삼상유도전동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어댑터·충전기 등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가이드 라벨제도, 유럽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라벨제도, 일본은 Top Runner 프로그램 및 통일에너지절약 라벨제도, 중국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도 등이 있다.

